

의안번호	제30호
의결연월일	2017. 6. 8.

논산시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5월 23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2017년 6월 8일,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
- 위원회 위원 수, 당연직 위원의 참여 범위, 위촉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고 특정성별 참여 범위 및 위원의 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
 - (제명)
 - ▶ 논산시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⇒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
 - (안 제1조)
 - ▶ 강경젓갈축제(이하 “젓갈축제” 라 한다) ⇒ 강경젓갈축제

- (안 제2조)

- ▶ 위원회 ⇒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
- ▶ 젓갈축제행사 ⇒ 강경젓갈축제(이하 “젓갈축제” 라 한다)행사

- (안 제3조제2항)

- ▶ 시장 ⇒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

○ 위원회 위원 수 개정 및 위촉위원의 특정성별 참여 범위 제한 규정 신설
(안 제3조제1항)

- 위원회 위원 수 개정

- ▶ 10명이상 15명 이하 ⇒ 15명 이상 20명 이하

- 특정성별 참여 범위

- ▶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

○ 당연직 위원의 참여 범위 개정 및 위원의 자격 제한 규정 신설(안 제3조제2항)

- 당연직 위원 참여 범위 개정

- ▶ 논산시 의회의원(강경지역구 출신), 강경읍장, 시 업무 담당과장, 강경읍 번영회장
⇒ 논산시 의회의원(강경지역구 출신), 강경읍장, 시 업무 담당과장

- 위원의 자격 제한 규정 신설

- ▶ 금품·향응수수, 불법로비, 배임·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

○ 위촉위원 임기 개정 및 연임차수 제한(안 제4조)

- 위촉위원 임기 : 1년(연임) ⇒ 2년(한 차례만 연임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